

다시 일하려는 소망을 키워드립니다! 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편집부



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는 폐업한 영세개
인사업자 중 결손처분된 국세체납액이 있는 사
람들의 재기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가 2012년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
처분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1인당
5백만원한도 내에서 납부의무를 소멸시켜준다.

1. 신청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이어야 한
다.

○ 총수입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납세자로서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2억
원 미만

○ 신규사업을 개시하거나 취업해야 한다.

2010년 1월 1일~2012년 12월 31일 기간 중
새로이 사업개시를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
청하거나,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
무중인 경우

○ 조세 범칙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신청일
현재 조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2. 신청 방법

○ 신청할 곳

결손세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체납한 세무서)

* 결손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를 이용하거나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

으며, 여러 세무서에 결손세액이 있는 경우 각각의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출해야 할 서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신청서」와 사업자 등록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2010. 1. 1.~2012. 12. 31. 기간 중 새로이 사업을 시작한 사람
-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본
- ▶ 2010. 1. 1.~2012. 12. 31. 기간 중 취업한 사람
-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취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등
*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신청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 받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양식에 의해 작성하면 된다.

○ 신청 기간 : 2011. 1. 1.~2013. 12. 31

* 신청기한은 2013년까지이나 사업자등록신청 및 취업은 2012년까지 사업을 개시하거나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3. 납부의무 소멸 범위

- 2011. 12. 31 이전에 결손처분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합하여 납세자 1인당 5백만원까지
* 여러 세무서에 결손세액이 있는 경우 모든 세무서의 결손세액을 합하여 5백만원이며, 납부의무 소멸순서는 고지간별로 납세자가 신청한 순서에 의합니다.


4. 납부의무 소멸 결정

○ 결정 방식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멸 여부를 결정한다.

○ 결정 기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납부의무 소멸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도 허위로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결손처분일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멸결정이 취소되고 재차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 이번호 「세무·회계」는 필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편집부에서 대체합니다.



자동차전용도로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4월 1일부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지난 3월 31일 밝혔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차량의 운행속도나 시설기준 등이 고속도로와 유사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치사율도 일반도로보다 약 3배나 높다고 개정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어길 경우 운전자 본인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범칙금 3만원, 동승자 미착용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